

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(안) 검 토 보 고

I. 예비비 지출 현황

- 지출결정액 : 10억원
- 지출액 : 2억 4천 5백만원
- 이월액 : 0원
-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 : 7억 5천 5백만원

-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75.5%가 발생하였음.

〈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〉

(단위:백만원)

세부사업	통계목	지출결정액 ㉠	지출원인 행위액 ㉡	지출액 ㉢	이월액 ㉣	집행잔액 ㉤=㉠-㉢-㉣
계		1,000	245	245	-	755
코로나19 자가검사 실시	사무관리비	1,000	245	245	-	755

II. 검토의견

가. 코로나19 자가검사 실시 예비비 지출

- 행정국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선제적 자가검사 실시를 위한 소요 비용을 예비비(2억 4천 5백만원)로 지출하였음.

□ 자가검사 실시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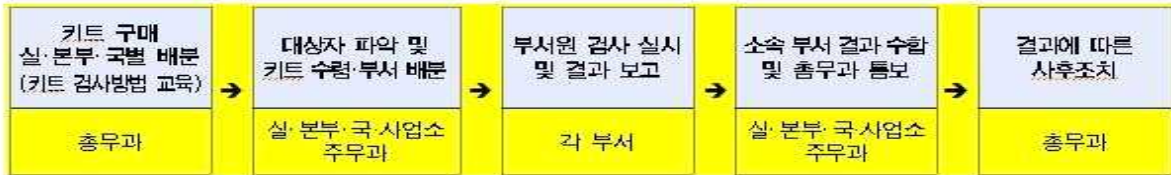
○ 기간/횟수 : '22. 2. 7.(월) ~ 4. 28.(목) 12주 / 매주 2회, 총 24회

○ 대상자 : 총 17,200명(본청 5,100명, 사업소 5,700명, *상주 근로자 등 6,400명)

- 상주근로자 : 공무원, 공공안전관, 초단근무, 기간제, 상주 용역직원 등

○ 실시방법 : 부서(4급) 단위별 직원 자체 검사(자가검사키트 활용)

○ 추진절차



○ 소요예산 : 1,000백만원 (17,200명 × *단가 2,420원 × 24회분)

- 출처: 행정국 제출자료

〈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〉

(단위: 원)

과 목				지출결정액	지출액	지출잔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 사 유
조직	단위	세부	통계목				지출 결정일	지출일	
합 계				1,000,000,000	245,040,720	754,959,280			
행정국 총무과	행정관리 지원	코로나19 자가검사 실시	사무관 리비	1,000,000,000	245,040,720	754,959,280	2022- 02-04	2022- 02-09	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본청 및 사업소 전직원 자가검사 실시를 위한 예비비 사용

○ 예비비는 「지방자치법」(제144조1) 및 「지방재정법」(제43조제1항2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던지, 선제적으로 본예산 편성을 할 수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.

※ 2022.2.2.자 서울 코로나 확진자는 5,218명(1.3.자 937명 대비 4,281명 증가, 457%↑)
- 출처: 행정국 제출자료

계약일시	키트 수량(개)	구매단가(원)	금액(원)	비고
계	101,000	2,420	245,040,720	예비비
2022.02.25.	51,000	2,420	123,420,000	
2022.04.04.	25,000	2,420	60,810,360	
2022.04.22.	25,000	2,420	60,810,360	

- 출처: 행정국 제출자료

○ 또한, 예비비 지출 결정후 결정액 10억원 중 75.5%인 7억 5천 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, 미래의 확진자 추이 예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, 불용액이 과다한 바, 17,200명을 대상으로 24회분을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구매하기로 한 산출기초가 과다추계한 것은 아닌지, 추후 재유형을 대비하여 검사키트 물량을 추가 비축할 필요는 없었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
※ 행정국은 확진자 감소 및 코로나19 2등급 조정(2022년 4월) 이후 필수 공공서비스 수행 등으로 자체검사가 필요한 부서에 자가진단키트를 배부 및 검사 실시하여 검사 수요 감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.

(2022년 2월~4월 서울시 일별 확진자 추이)

- 3월 중순 128,332명을 정점으로 4월들어 확진자 추세 감소

○ 일별 확진자 추이



- 출처: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자료

전문위원	김정덕	입법조사관	이태기
------	-----	-------	-----

[참고자료]

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

(단위:원)

구 분 조 직	예 산 과 목					예산액 ①	지출액 ②	예산 잔액 ①-②	소요액	예비비 요구액	비고
	정책	단위	세부	편성목	통계목						
행정국 총무과	행정지원 체계강화	행정관리 지원	코로나19 자가검사 실시	일반 운영비 (201)	사무 관리비 (201-01)	-				1,000,000,000	
<p><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분청 및 사업소 전 직원 선제적 자가검사 실시를 위한 소요예산의 예비비 사용을 신청함 (’21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2년 2월 4일 행정국장</p> <p>기획조정실장 귀하</p>											